

제 9 장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제 9.1 조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의 확인

제1.2조(다른 협정과의 관계)에 더하여, 양 당사국은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상의 서로에 대한 자국의 기존의 권리 및 의무를 확인한다.

제 9.2 조 적용범위

1. 이 장은, 달리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양 당사국 간의 상품 무역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앙정부기관의 모든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준비·채택 및 적용에 적용되며¹⁾, 사소한 성격의 개정과 추가를 제외하고는 그에 대한 모든 개정²⁾과 규칙 또는 대상품목 범위의 추가에도 적용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장은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정부기관이 자신의 생산 또는 소비 요건을 위하여 마련한 기술 규격,
또는

나.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

제 9.3 조 국제표준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제2조, 제5조 및 부속서 3의 의미상 국제 표준·지침 또는 권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각 당사국은 세계

1)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은 표준,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한 이 장에서의 언급은 계량과 관련된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2) “모든 개정”에는 기술규정의 폐지도 포함된다.

무역기구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위원회가 발행한 1995년 1월 1일 이래 위원회가 채택한 결정 및 권고사항, G/TBT/1/Rev.8, 2002년 5월 23일, 제9부(협정 제2조, 제5조 및 부속서 3과 관련한 국제 표준·지침 및 권고의 개발 원칙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에 규정된 원칙에 그 판정의 근거를 둔다.

제 9.4 조 공동협력

1.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제도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이고 각 당사국 시장에 대한 접근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 분야에 있어서 협력을 강화한다. 특히, 양 당사국은 특정 사안이나 분야에 적절한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에 관한 무역촉진 이니셔티브를 확인하고 개발하며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투명성, 우수규제관행의 증진, 국제표준과의 정합, 그리고 적합성 평가기관의 자격부여를 위한 인정의 활용과 같은 규제 문제에 관한 협력을 포함할 수 있다.

2. 요청이 있는 경우, 당사국은 이 장에 따른 협력 확대를 위하여 요청 당사국이 제시하는 특정 분야에 대한 제안을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제 9.5 조 적합성 평가절차

1. 양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절차 결과의 수용을 촉진하기 위한 광범위한 메커니즘이 존재함을 인정한다. 다음은 그 예시이다.

가. 당사국은 특정 기술규정에 대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는 기관이 수행한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를 수용하기로 다른 쪽 당사국과 합의할 수 있다.

나.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는 적합성 평가기관에 자격을 부여하는 인정 절차를 채택할 수 있다.

다.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는 적합성 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라.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를 인정할 수 있다.

마. 각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는 적합성 평가기관은 상대방의 평가절차의 결과를 수용하는 자발적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그리고

바. 수입 당사국은 공급자의 적합성 선언을 신뢰할 수 있다.

양 당사국은 적합성 평가결과의 수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 및 이와 유사한 메커니즘에 대한 정보 교환을 강화한다.

2.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를 수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그 결정의 이유를 설명한다.

3.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적합성 평가기관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다른 쪽 당사국 영역의 적합성 평가기관을 인정 또는 승인하거나 이러한 기관에게 면허를 부여하거나 이러한 기관을 달리 인정한다. 당사국이 자국 영역에서의 특정 기술규정이나 표준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는 기관을 인정 또는 승인하거나 이러한 기관에게 면허를 부여하거나 이러한 기관을 달리 인정하면서, 그 기술규정이나 표준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다른 쪽 당사국 영역의 기관을 인정 또는 승인하거나 이러한 기관에게 면허를 부여하거나 이러한 기관을 달리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경우,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의 이유를 설명한다.

4. 적합성 평가기관을 인정 또는 승인하거나 이러한 기관에게 면허를 부여하거나 이러한 기관을 달리 인정하는 당사국은, 적합성 평가기관이 인정·승인·면허부여를 받거나 달리 인정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자국이 공표한 기준을 바탕으로 한다.

5. 각 당사국은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의 통신장비 적합성평가를 위한 상호인정협정(1998)*의 제2단계를 다른 쪽 당사국에 대하여 가능한 한 조속히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이 협정의 발효일 후 1년 이내에 대한민국은 제2단계 이행을 위하여 자국의 법령 개정안의 공고를 공표할 것이다.

제 9.6 조

투 명 성

1. 각 당사국은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개발에 다른 쪽 당사국의 인이 참여하도록 허용한다³⁾. 각 당사국은 자국인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다른 쪽 당사국의 인이 이러한 조치의 개발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비정부기관이 표준과 자발적인 적합성 평가절차의 개발에 있어서 제1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한다.

3. 인과 다른 쪽 당사국이 제안된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를 알고 이해하며 이러한 규정 및 절차에 대하여 의미있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제2조제9항, 제3조제2항, 제5조제6항 또는 제7조제2항에 따라 공고를 공표하고 통보를 제출하는 당사국은 다음을 한다.

가. 제안된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가 추구하는 목적과 그것이 그 목적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다.

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에 그 제안을 통보할 때에 이와 동시에, 대한민국의 제안인 경우에는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미합중국 질의처, 또는 미합중국의 제안인 경우에는 부속서 9-가에 따라 설치된 대한민국 조정자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다른 쪽 당사국에게 그 제안을 전달한다. 그리고

다. 제안된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하여 인 또는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 접수한 의견을 되도록이면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공개한다.

각 당사국은 관련 국제표준의 기술적인 내용을 따르는 새로운 기술규정과 기존의 기술규정의 개정도 공표하고 통보한다. 각 당사국은 관련 국제표준의 기술적인 내용을 따르는 중앙정부 직하위의 지방정부의 새로운 기술규정과

3) 제1항 첫 번째 문장의 목적상 그리고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인을 포함한 대중에게 공개되는 참여절차를 유지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개발에 다른 쪽 당사국의 인이 참여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기존의 기술규정의 개정이 공표되고 나호에 언급된 질의처를 통하여 통보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자국에게 이용가능한 합리적인 조치도 취한다.

각 당사국은 나호에 따른 제안을 전달한 후, 인과 다른 쪽 당사국이 그 제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최소 60일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당사국은 의견제시기간의 연장에 관한 인 또는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의 합리적인 요청을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4. 당사국이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제2조제10항, 제3조제2항, 제5조제7항, 또는 제7조제2항에 따라 통보한 경우, 당사국은 이와 동시에 제3항 나호에 언급된 질의처를 통하여 다른 쪽 당사국에게 그 제안에 대한 통보 및 그 제안의 문안을 전자적으로 전달한다. 각 당사국은 관련 국제표준의 기술적인 내용을 따르는 새로운 기술규정과 기존의 기술규정의 개정도 통보한다. 각 당사국은 관련 국제표준의 기술적인 내용을 따르는 중앙정부 직하위의 지방정부의 새로운 기술규정과 기존의 기술규정의 개정이 공표되고 제3항나호에 언급된 질의처를 통하여 통보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자국에게 이용가능한 합리적인 조치도 취한다.

5. 각 당사국은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제2조제9항, 제2조제11항, 제5조제6항 및 제5조제8항에 따라 요구되는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제안본과 최종본의 공고를 되도록이면 전자적인 수단으로 단일의 관보에 공표하고, 이를 발행하는 정부기관이 추가적인 경로를 통하여 이를 전파하도록 장려한다.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제3조제2항 및 제7조제2항에 따라 통보되는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제안본과 최종본의 공고에 대하여, 각 당사국은 그러한 모든 공고가 단일 인터넷 사이트 또는 그 밖의 정보출처를 통하여 접근가능하도록, 실행 가능한 한도에서, 보장한다.

6.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보에 공표하는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의 최종본의 공고에 다음을 포함한다.

가. 그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의 목적과 그 목적이 어떻게 다루어 지는지에 대한 설명, 그리고

나. 의견제시기간 동안 자국이 접수한 중요한 의견에 대한 답변, 그리고 제안된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수정에 대한 설명

7. 요청이 있는 경우, 각 당사국은 당사국이 채택하였거나 채택하겠다고 제안한 표준,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의 목적과 취지에 관하여 이용가능한 추가정보를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제공한다. 그러한 요청은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가 다루려는 사안, 당사국이 고려한 대체 방안, 그리고 당사국이 선택한 특정한 방안의 장점에 관한 정보의 요청을 포함할 수 있다.

제 9.7 조 자동차 표준 및 기술 규정

1. 양 당사국은 국제연합 유럽경제위원회의 자동차규제 조화를 위한 세계 포럼(WP.29)에서의 협력을 포함하여 자동차의 환경성능 및 안전에 관한 표준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양자적으로 협력한다.

2. 각 당사국은 무역에 대한 기술 장벽에 관한 협정 제2조제2항에 규정된 한도에서, 자동차와 관련된 기술규정이 국제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할 목적으로 또는 그러한 효과를 갖도록 준비·채택 또는 적용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와 관련된 기술규정은 비달성이 야기하게 될 위험을 고려하여, 정당한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것 이상으로 무역 제한적이어서는 아니된다. 그러한 정당한 목적은 특히 국가안보상 요건, 기만적인 관행의 방지, 그리고 인간의 건강 또는 안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 또는 환경의 보호이다. 그러한 위험을 평가함에 있어 고려할 관련 요소는 특히 이용가능한 과학적 및 기술적 정보, 관련 처리기술, 또는 상품의 의도된 최종용도이다.

제 9.8 조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위원회

1. 양 당사국은 부속서 9-가에 규정된 대로 각 당사국의 대표들로 구성된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위원회를 설치한다.

2.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이 장의 이행 및 운영의 점검

- 나. 표준,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의 개발·채택·적용 또는 집행과 관련하여 당사국이 제기하는 문제의 신속한 처리
- 다.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개발 및 개선에 대한 협력 증진
 - 라. 적절한 경우 양 당사국 영역의 정부 및 비정부 적합성 평가기관을 포함하여, 적합성 평가기관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당사국이 제시하는 특정분야에 대한 제안의 검토 원활화
 - 마. 다른 쪽 당사국이 지정한 분야에서, 협정교섭을 위한 요청을 포함하여, 어느 한 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 영역의 기관이 수행한 적합성 평가절차 결과를 인정하도록 하는 요청에 대한 검토 원활화
 - 바.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에 관련된 활동에 참여하는 비정부간·지역적 및 다자적 포럼에서의 진전사항에 관한 정보 교환
- 사.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 장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한 협의
 - 아.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상의 진전사항에 비추어 이 장을 검토하고, 그러한 진전사항에 비추어 이 장의 개정을 위한 권고 개발
- 자. 이 장을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양 당사국이 판단하는 그 밖의 조치를 취하는 것
- 차.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와 관련된 제3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 접근방법을 도출하기 위하여,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러한 문제에 관한 양 당사국의 견해에 관한 정보 교환, 그리고
- 카.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장의 이행에 관하여 공동 위원회에 보고

3. 양 당사국이 제2항사호에 따른 협의를 이용하는 경우, 그러한 협의는, 양 당사국이 합의하면, 제22.7조(협의)에 따른 협의를 구성한다.

4.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위원회는 매년 최소 1회 회합한다.

5. 위원회는, 자신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임시 작업반을 포함하여, 각 당사국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작업반을 설치하고, 업무범위 및 위임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위원회의 결정을 조건으로, 그리고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대로, 임시 작업반을 포함하여, 각 작업반은

가.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정부 전문가와 이해당사자를

포함하거나 그들과 협의할 수 있다. 그리고
나. 관련 국제 활동을 고려하여, 작업계획을 결정할 수 있다.

6. 이 협정의 발효일 후 30일 이내에, 각 당사국은 화장품·가정용 전기용품·자동차와 소음 및 배출에 대하여, 그리고 당사국이 확인한 그 밖의 모든 분야에 대하여 적합성 평가기관을 인정 또는 승인하거나 이러한 기관에게 면허를 부여하거나 이러한 기관을 달리 인정하기 위하여 자국이 사용한 기준을 위원회에 통보한다. 그 이후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이 요청하는 그 밖의 분야에 대하여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자국이 사용하는 기준을 위원회에 통보한다. 위원회는 각 당사국의 적합성 평가체제에 대한 상호 이해를 개선하고 양 당사국간의 무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능한 개선을 논의하기 위하여 이 정보를 검토한다.

제 9.9 조 정보교환

이 장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에 대하여 당사국이 제공하는 모든 정보 또는 설명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인쇄하여 또는 전자적으로 제공된다. 당사국은 그러한 각 요청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응답하도록 노력한다.

제 9.10 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중앙정부기관⁴⁾, 지방정부기관, 적합성 평가절차, 표준 및 기술규정은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부속서 1에서 그러한 용어에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우수규제관행이라 함은 1) 명확하게 확인된 정책목표에 공헌하고 그러한

4)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국의 중앙정부가 자신을 대신하여 표준,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를 준비·채택 또는 적용하도록 승인한 비정부기관은, 이 장의 목적상 그러한 활동에 대하여는 중앙정부 기관으로 간주된다.

목표를 달성하는 데 효과적이며, 2) 건전한 법적 및 경험적 근거가 있고, 3) 경제적·환경적 및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여, 사회전반에 걸친 규제의 파급효과를 고려하고, 4) 비용 및 시장왜곡을 최소화하고 5) 시장 유인과 목표 중심적 접근 방법을 통하여 혁신을 증진하고 6) 사용자에게 명확하고 간단하며 실용적이고, 7) 당사국의 그 밖의 규정 및 정책에 합치하고, 그리고 8) 국내 및 국제적 경쟁·무역 및 투자 원칙과 가능한 한 양립하는 관행을 말한다.

부속서 9-가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위원회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위원회는 다음이 주관한다.

- 가. 대한민국의 경우, 기술표준원 또는 그 승계기관, 그리고
- 나. 미합중국의 경우, 미합중국무역대표부 또는 그 승계기관

부속서 9-나 자동차 작업반

1. 양 당사국은 제9.8조제5항에 따라 각 당사국의 대표들로 구성된 자동차 작업반을 설치한다. 대한민국의 경우 외교통상부, 미합중국의 경우 미합중국 무역대표부의 대표가 조정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한다. 작업반은 미합중국 교통부를 대신하여 연방고속도로교통안전청, 미합중국 환경보호청, 대한민국 정보통신부, 대한민국 산업자원부, 대한민국 환경부, 대한민국 건설교통부 그리고 그 밖의 관련 정부 규제기관을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이러한 기관들과 협의한다. 작업반은 양 당사국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그 밖의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를 포함하거나 이들과 협의할 수 있다.

2. 작업반은

- 가. 관련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개발·이행 및 집행에 대하여 당사국이 제기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협의한다.
- 나. 관련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개발·이행 및 집행에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양 당사국과 그 영역의 이해당사자 간의 협력 증대를 원활히 한다.
- 다. 자동차 규제 문제를 다루는 다자간 포럼에서 양 당사국간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그리고
- 라. 자동차 규제에 대한 우수규제관행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의 관련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개발·이행 및 집행을 점검한다.

3. 작업반은, 조정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최소 매년 1회 소집된다. 작업반 회의는 통상적으로 WP.29 또는 양 당사국 모두가 참여하고 자동차 규제 문제를 다루는 그 밖의 양자 또는 다자간 포럼의 회의와 연계하여 개최된다. 작업반은 또한 전자우편, 화상회의, 그리고 작업반이 합의하는 그 밖의 통신수단을 통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 4. 가. 작업반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당사국이 비정부 전문가 또는 이해당사자에게 자국이 개발중인 다음에 대한 의견제시⁵⁾를 요청하기

5) 미합중국은 규정안 또는 수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를 요청하는 공고를 연방관보에 공표하는 때에 비정부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의견 제시를 위하여 최초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위하여 최초로 서면 정보를 제공하는 날 이전에 그 당사국은 그 정보를 작업반에 제공한다.

1) 관련 표준,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 또는

2) 관련 표준,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의 개정

어느 한 쪽 당사국이 제9.6조제3항 또는 제9.6조제4항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제안을 전달하는 때에 그 당사국은 동시에 그 제안을 작업반에 전달한다.

나. 준비가 되는 대로, 당사국은 자국이 개발중인 관련 표준,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의 초안 또는 그 개정의 초안을 작업반에 제공한다.

다.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사국은 자국이 개발중인 관련 표준,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나 그 개정에 대하여, 고려중인 그 밖의 규제 접근방식과 규제영향분석에 관한 정보와 같은 이용가능한 추가정보를 제공한다.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작업반은 제2항에 기술된 작업반의 임무에 합치되게 당사국이 제공하는 정보를 평가하여야 할 것이며 그 당사국에게 이에 관한 견해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5. 당사국이 자국이 채택한 관련 표준,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하여 사후이행검토를 수행하는 경우

가. 그 당사국은 검토 결과의 요약을 작업반에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나.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작업반은 검토의 결과와 검토에 사용된 방법 및 가정을 분석하여야 할 것이다.

이 항의 목적상, **사후이행검토**라 함은 명시된 목표를 달성하는지 여부, 그 부담정도, 그리고 당사국이 채택하는 그 밖의 표준,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와의 양립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 표준,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가 이행된 이후 그 효과성에 대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심사를 말한다.

6. 이 부속서의 목적상,

관련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라 함은 자동차에 영향을 미치는 표준,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를 말한다.